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한시법으로 폐지)

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폐지 2019년 3월 31일 조례 제1687호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 2018년 12월 19일 조례 제1687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